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와
보험금 착오지급 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 고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The study of Supreme Court' judgment related to law relationship
after error payment of insurance amount and the meaning and
range of uninsured car in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조규성*
Gyuseong, Cho

<국문초록>

대상판결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규정한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그 자동차” 외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약관을 내세우거나 계약의 종료 내지 해지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동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차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내용은 타당한 약관 해석이라고 판단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약관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다만 자동차사고 손해사정실무의 관행상 이렇게 해석할 경우 사고 선처리를 담당할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계약한 보험회사가 불이익을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즉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불분명하고, 해당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를 들어 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명시적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우선적으로 해당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나중에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보험회사가 직접 구상 내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상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국문 주제어 :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무보험자동차의 범위, 자동차사고, 보험자대위, 자동차보험 약관, 대법원 판결

I. 들어가는 말

자동차보험의 여러 담보 중목 중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보험가입자 및 그의 가족 등이 운전(다른 자동차 탑승 포함) 또는 보행 중에 무보험차량 또는 뺑소니차량 등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상(死傷)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는 보험”을 말한다.¹⁾

해당 담보 중목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상품 중에 ‘무보험운전자담보(uninsured motorist insurance)’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은 “피보험자와 그 가족 또는 피보험차량의 승객이 다른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이거나 사고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른바 뺑소니를 쳐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가해자를 대신해서 그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이다.²⁾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량을 합해서 총19,779,582대이며³⁾, 자동차사고 건수로는 2012년을 기준으로 연간 223,656건이 발생해서 이중 사망자가 5,392명, 부상자가 344,565명에 이른다.⁴⁾ 또한 이들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2011년 3월 기준으로 책임보험(대인배상 I)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 대인배상 II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93.7%⁵⁾로 전체 차량등록대수 대비 약 100만대 이상의 차량이 대인배상 II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어 자동차보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해도 상대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1) 박세민, 「보험법(제2판)」, 박영사, 2013, 742면.

2) 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7, 513면.

3) <http://www.index.go.kr/potal/main>(통계청)에서 2014. 7. 30.자 확인.

4)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4(통계청 자료, 2014. 7. 30.자 확인)

5) 보험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말 현재 대인배상 I에 가입한 차량은 17,062,771대이며, 이중에서 대인배상 II에 가입한 차량은 15,918,754대로서 운행정지 차량을 감안하더라도 약 100만대 이상이 대인배상 II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 I”, 2011, 35면.

이와 같이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와 동일하게 보상받게 하려는 것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이며⁶⁾, 이는 불의의 사고시 실손해액을 온전히 보전받기를 원하는 보험가입자가 늘면서 그 가입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특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약함)에 의한 정부보장사업⁸⁾ 운용현황⁹⁾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무보험차량 혹은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이는 결국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표 또는 수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약관의 해석과 관련해서 무보험자동차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약관해석의 문제와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¹⁰⁾

- 6) 김철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도입배경, 법적성질 등에 대한 의견”, 월간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2000, 34~35면.
- 7) 김성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중복보험성과 의무보험화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제21권 제1호),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2013, 170면.
- 8)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사고나 무보험차사고와 같이 책임보험의 기능이 수행될 수 없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78. 8.부터 개정 자배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김득주의 1, 「자동차손해배상제도 해설」, 도서출판 청화, 2001, 494-495면.
- 9) 건설교통부, “2004 부담금운용보고서”, “2006 부담금운용보고서”에 의하면,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지급한 정부보장사업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뺑소니		무보험 등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년	4,735	27,136	4,174	25,152	8,909	52,288
2002년	4,459	24,828	4,632	25,658	9,091	50,486
2003년	4,625	28,566	5,108	31,881	9,733	60,447
2004년	4,531	27,878	6,042	33,745	10,573	60,165
2005년	5,059	26,188	6,618	32,136	11,677	58,324
2006년	4,573	25,794	5,573	35,931	10,146	61,725

- 10)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일반채권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권인지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각 10년과 3년으로 틀려지게 되는 부분과 사고 관련 보험회사 간의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환입시기가 달라서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이 언제

즉 첫 번째로 가해차량은 A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해당 차량이 제2회 보험료의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이유로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B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해자들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중복가입하고 있어 중복보험의 원리에 따라 B보험회사는 다른 중복보험 가입회사인 C보험회사에 대해 지급 보험금의 일부를 구상금으로 환입하였다.

이후 C보험회사가 A보험회사의 대인배상Ⅱ 담보에 대한 면책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A보험회사를 상대로 다시 구상금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A보험회사의 가해차량에 대한 면책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가해차량이 “A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가해차량이 피고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두 번째로 A와 B보험회사간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의 성질이 피해자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B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A보험회사(결국 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있어서의 본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결국 일반채권과 같이 그 기간을 10년¹¹⁾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상판결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개념과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에 대해 검토해본 후에 대상 판결에 대한 필자의 의견과 약관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막기 위한 약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인지에 대해서도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1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에 소멸시효에 관해 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II. 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건 소송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무보험 자동차의 범위와 관련된 약관 해석의 문제와 중복보험의 사고 선처리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다툼이 생김으로 인해 손해보험사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과 소송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 10. 25. 08:45경 가해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서 오토바이 운전자(사망)와 탑승자(부상)를 사상케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당시 가해차량은 A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계속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해 보험계약상의 대인배상 I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되어 피해자들은 A보험회사로부터는 대인배상 II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결국 피해 오토바이의 운전자(망인)의 상속인(유족)들과 탑승인(부상자)은 자신들이 가입한 B보험회사로부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게 되었다. 그리고 위 B보험회사는 다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중복보험사인 다른 C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해서 지급보험금의 일부를 환입하였다.¹²⁾

이에 C보험회사는 B보험회사에게 지급한 구상금에 대해 가해차량이 가입한 A보험회사의 계속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보가 부당하다(즉 대인배상 II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A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6. 7.자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¹³⁾

12)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기명피보험자 외에 배우자, 그리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 피보험자들 중에 차량을 소유한 자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중복보험에 해당되어 지급한 보험금의 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해당 사안도 망인과 상속인들 중 자녀가 차량을 소유했고 각자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있었다.

13) 결국 가해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A보험회사가 이건 교통사고의 오토바이 운전자(사망)와 탑승자(부상)에게 대인배상 I 과 II에 의한 책임을 부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관해석 및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부당하게 면책시켰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후 뒤늦게 이러한 소송결과를 알게 된 B보험회사는 2010. 1. 22. 자로 A보험회사에 대해 C보험회사와 같은 내용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A보험회사는 B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구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B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회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구상금분쟁 심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구상금분쟁심의회는 B보험회사의 청구를 인용해 A보험회사로 하여금 B보험회사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A보험회사는 위 상호협정에 따라 일단 구상금을 먼저 지급하면서 동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지만 기각당하자, 최종적으로 B보험회사를 상대로 본 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¹⁴⁾

2. 제1심 법원의 판단¹⁵⁾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면책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에 대해서 해당차량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인 판시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상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14) 사실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중복보험 가입회사 중인 하나인 C보험회사의 경우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 원고회사의 면책주장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즉시 원고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2005. 12. 26.)한 반면에 피고인 B보험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4년이 지나서야 C보험회사가 승소한 사실을 인지한 후 2010. 1. 22.에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였던 것은 피고가 보험금 회수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러한 B보험회사의 소극적 업무처리행태가 판결 결과를 놓고 보면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피고 B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5) 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4425 판결.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컨대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우거나, 계약의 종료 내지 해지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동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차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약관해석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 때문에 원고인 A보험회사가 피해자(망인 등)에 대하여 2회 보험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사유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가해차량은 원고의 면책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가해차량은 피고인 B보험회사와 피해자(망인 등)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피고에게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기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구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피고는 자신들이 피해자(망인 등)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자동차보험정책 등을 고려한 대법원 판결¹⁶⁾에 기해 비로소 발생한 독자적 청구권 혹은 자신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그 지급의무에 기해 지급한 것이었을 뿐이지 착오에 기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16) 피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58 판결인데, 제1심 법원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에 있어 무보험자동차의 해석 및 그와 관련된 책임범위에 관한 근거 판례이지 소멸시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판례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상금청구채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채권)의 일종에 해당되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망인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역시 피해자(망인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원고 차량 소유자를 면책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한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인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 구상금청구권의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해자(망인 등)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데, 망인의 유족은 사고 발생일인 2003. 10. 하순경 혹은 아무리 늦어도 망인 등이 원고로부터 대인배상 I에 해당하는 일부보험금을 지급받은 2003. 11. 17.경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0. 1. 22.경에야 피고가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구상금을 청구하였고¹⁷⁾, 2010. 10. 12. 경 마침내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심의청구를 하였음은 역

17)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도 피고가 C보험회사와 원고 간의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시(2007. 6. 7.) 내지 판결 확정시 혹은 피고가 착오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를 대신 변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나아가 당초 원고의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험금 지급거절로 인해 피고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애 사유가 있었고, 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함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제1심 법원은 그와 같은 소송 및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은 구상금 채권 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역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수상 명백하므로 피해자(망인 등)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것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의 신청에 따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기해 협정준수를 위해 지급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법률상의 원인을 결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구상금청구권의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였다.

3. 항소심 법원의 판결¹⁸⁾

1심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시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동일하다.

4. 대법원의 판결¹⁹⁾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지만 대법원 역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 내용은 제1심과 동일하지만 이 사건 구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대인배상 I 부분을 제외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에 의한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망인 등)이 피고와 체결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따라 피해자(망인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자신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그 지급의무에 기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위 보험금 지

18) 대구지방법원 20101 10 21. 선고 2011나11823 판결.

1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급은 착오에 의한 타인의 채무변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B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다른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보험회사가 피해자(망인 등)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차량 보험회사(A보험회사)가 자동차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B보험회사가 피해자(망인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망인 등)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B보험회사의 위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망인 등)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원심이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²⁰⁾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B보험회사에게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제1심과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것임에도 피고의 신청에 따른 구상금분쟁심의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기해 원고가 협정준수를 위해 구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실제 그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0) 민법 제739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자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에 원고회사를 대신해서 지급한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의 입장에서는 원고회사의 면책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원고회사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이 원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해당하고 피고가 지출한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은 사무관리비용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Ⅲ. 판례 평석

1. 문제의 제기

자동차보험의 대중화와 함께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역시 상당히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상법 보다는 주로 약관의 해석문제로 귀결되고, 판례의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여느 다른 분야보다도 많을 뿐 아니라 또한 축적된 판례는 여타 실정법 못지않은 법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¹⁾

자동차보험약관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그 약관의 유무효도 판단하는 판례는 사법적 통제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특히 판례는 자동차보험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건에서 판례는 피해자보호, 손해의 공평한 분담, 위험의 적절한 배분, 그리고 인위적 사고의 방지 등 여러 합목적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정치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²²⁾

하지만 우리의 자동차사고 손해사정실무의 현실을 돌아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밖에 없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고(일명, 면부책 관련사고)와 관련된 약관해석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고 나아가 무리하게 면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손해사정실무에서의 또 다른 슬픈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2회분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회사의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피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을 받는 대신

21) 장덕조, “자동차보험에 관한 새로운 법적 고찰-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법·지식재산법의 새로운 지평, 진산 김문환 선생정년기념논문집 제2권, 법문사, 2011, 307면.

22) 장덕조, 앞의 논문, 345-346면.

보험금 산정에 있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²³⁾

실제로 손해사정실무에서는 이렇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 보험가입회사의 무리하고도 자의적인 면부책 판단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해당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규정한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관한 일반론

1)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도입배경과 운용현황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1991. 11. 동부화재에 의해 특별약관으로 최초 판매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²⁴⁾ 일본에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SAP)과 자동차종합보험(PAP)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서, 1976. 1. 발매된 자가용자동차보험(PAP)에 새로운 담보종목으로서 자손사고보험에 같이 만들어 넣어진 것이 그 효시라고 한다.²⁵⁾

우리나라는 이를 보완하여 미국의 FAP(Family Automobile Policy)의 무보험자동차운전자보장(Uninsured Motorist Coverage) 즉, 피보험자와 그 가족 또는 피보험차량의 승객이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가해자를 대신하여 배상해 주는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도입하였다고 한다.²⁶⁾

23)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손해액만 보상받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조규성, 「자동차보험론(제2판)」, 동방문화사, 2014, 232면.

24) 양해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제23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241면.

25) 김재걸,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제15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296면.

26) 이재복, 양해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과 양도조항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제68집), 한국보험학회, 2004, 76면.

2)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보상내용 및 성격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주된 보상 내용은,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되,²⁷⁾ ②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을 보상한도²⁸⁾로 하여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며, ③ 위 특약상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 자녀로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사람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말한다”고 해당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각 담보종목별로 법률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대인·대물배상책임담보’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사망 또는 상해와 재산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라 할 수 있고, ‘자기차량손해담보’는 피보험자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이며, ‘자기신체사고담보’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으로서 인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인보험’의 성격을 가지나, 피보험자의 신체 손상에 대한 치료비 등의 실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²⁹⁾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법적 성질에 대해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27) 1992년에 도입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차량의 운전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가해를 당한 경우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1998년 차량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가해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였다.

28) 1998년에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보상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였다.

29) 김종필,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777면.

떨린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인보험으로 파악하고, 피보험자 등의 중과실의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의 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³⁰⁾ 아울러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판단하면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³¹⁾,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을 기본적으로 인보험으로 파악하면서도 부수적으로 손해보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²⁾

3. 무보험자동차의 범위

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에 대해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가입했으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상대자동차가 대인배상Ⅱ등에 가입했어도 보험자의 면책이 되는 경우), ③ 본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이 경우는 그 차액부분이 종합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이며,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본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로 본다),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즉 뺑소니차량)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³⁾

30)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3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38808 판결 등.

32) 김종필, 앞의 논문, 783면.

아울러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사망시키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하고 있다. 즉 상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소유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량의 인도, 매매대금 결제, 이전등기의 필요서류 인도여부 등”을 고려하며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³⁴⁾

그리고 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통상 시군구 등록차량),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군용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것은 해당 담보가 자동차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상 자동차관련 보험에 있어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개념에도 경운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³⁵⁾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와 관련한 약관해석과 관련된 문제 중 손해사정실무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이 자동차사고로 일으킨 가해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자동차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최초로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에서 이러한 경우의 가해차량에 대해서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러한 논리는 이번 대상판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오고 있다.

33) 박은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둘 이상 가입된 경우의 중복보험 해당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32집), 한국법학원, 2008, 274면.

34) 송성열, 「교통사고 보험처리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8, 257-258면 ; 남원식의 6, 「(개정증보)조문별해석 자동차보험약관」, 한울출판사, 2002, 345면.

35) 이명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여부”, 월간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2000, 55면.

즉 대법원의 2002다61958 판결(구상금)내용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 풀이 상 무보험자동차라고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 한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컨대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2항 소정의 약관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 여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단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면책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보험자대위 등에 터 잡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무면허운전에 의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에 따라 쌍방 보험회사들 사이의 종국적 책임 귀속 여부를 가려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4.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문제점

자동차보험 약관의 해석상 대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가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B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를 기각한 논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의 논리대로라면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는(주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거절하기 위해 무리하게 면책약관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보험회사가 오히려 부당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즉 대상판결에 따른다면 결국 원래 피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원고인 A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선의로 피해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한 B보험회사만 부당하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상판결의 결론대로라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만약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리한 약관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로 선보상 처리를 유도하고 이러한 면책처리에 의심을 품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보험회사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나중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부당한 면책처리 사실을 알고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³⁶⁾³⁷⁾

따라서 이러한 손해사정실무상의 관행에 비추어보더라도 대상판결은 형평성에 있어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해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차

36) 실제 손해사정실무에서는 각 보험회사의 면부책 관련 판단이나 보험금 산정과 관련된 손해사정결과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존중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타사의 동일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사정과정이나 내용, 결과에 대해 확인이나 피드백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7) 물론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계약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에 사전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부책 판단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을 한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러한 불이익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손해사정실무에서는 이 경우 피해자의 민원 및 불만 계기로 인한 업무 부담과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 모두가 서로 보상처리를 미룰 경우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량을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계약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게 된다면,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혹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보험회사를 모두를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때까지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현행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그 시효기간이 2년³⁸⁾으로 단기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 혹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보상책임 유무를 다투다가 패소하고 시간이 경과해서 나중에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더더욱 피해자의 구제에 소홀해 질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³⁹⁾

2) 대상판결에 대한 재해석

피고는 소송과정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원고가 부당하게 대인배상Ⅱ 책임에 대한 면책주장을 함에 따라 자신은 자동차보험정책 등을 근거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착오로 타인인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45조 제1, 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피고의 주장도 논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된다. 즉 민법 제745조 제1, 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아닌 자가

38)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단기이다.

39) 대상판결에서도 피고인 B보험회사는 소송과정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원고가 부당하게 대인배상Ⅱ 책임에 대한 면책주장을 함에 따라 자신은 자동차보험정책 등을 근거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착오로 타인인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45조 제1, 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도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면책주장을 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로 부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한 보험금 청구를 받은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대해서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선해(善解)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 아닌 자의 착오로 인한 채무변제로 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증서 훼손, 담보 포기, 시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원래 채권을 잃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해서 원래의 채권자가 아닌 변제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서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⁴⁰⁾, 이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아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는 피고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원고가 부당한 면책주장을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원고보다는 채권자인 피고를 보호할 법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약관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상책임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단 보상

40) 즉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른 구상금 채권에 대해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의 성질에 따라 시효를 판단하게 된다면 이 법조문에 의해 발생하는 구상금 채권 중 채권자의 원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 발생하는 구상금 채권인 경우에 그 발생과 동시에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책임이 명백하게 발생하는 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선보상 처리를 하고 나중에 각 보험회사끼리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한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현행 약관대로라면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해 선보상 처리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잘못(혹은 착오)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⁴¹⁾, 받은 보험금을 반환한 피해자는 나중에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구제 또는 보호에도 미흡할 수가 있다.

따라서 대수판결과 같이 보험회사 등의 보상책임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일단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후에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약관에 명시적으로 가해차량의 보험가입회사에 대해 직접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주게 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⁴²⁾⁴³⁾

필자가 이러한 내용의 약관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 및 가해차량 보험가입회사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계약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나 보험금의 직접지급의무가 직접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계약한 보험회사는 가해자 및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

41) 물론 비채변제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2) 박현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무와 보상금 착오지급 후의 법률관계”, 재판과 판례(제17집), 대구판례연구회, 2008, 70면.

43) 물론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험자대위의 법리 및 자동차보험 약관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본다.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이다.⁴⁴⁾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계약한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의 협조를 얻어 그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가해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와 그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행사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IV. 맺는 말

대상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계약한 보험회사들은 그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거나 까다롭게 해서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질까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상당한 이유를 들어 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일 경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계약한 보험회사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해서 향후에는 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이 글은 비록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에 머무르고 있지만, 향후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와 보험자대위 등에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점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4) 대상판결의 대법원 판시이유에서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성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중복보험성과 의무보험화에 관한 연구”, 서울 법학(제21권 제1호),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2013.
- 김재걸,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제15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 김정렬외1, 「자동차손해배상제도 해설」, 도서출판 청화, 2001.
- 김종필,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김철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도입배경, 법적성질 등에 대한 의견”, 월간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2000.
- 남원식외6, 「(개정증보)조문별해석 자동차보험약관」, 한울출판사, 2002.
- 박세민, 「보험법(제2판)」, 박영사, 2013.
- 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7.
- 박은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가 둘 이상 가입된 경우의 중복보험 해당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32집), 한국법학원, 2008.
- 박현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무와 보상금 착오지급후의 법률관계”, 재판과 판례(제17집), 대구판례연구회, 2008.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 I”, 2011.
- 송성열, 「교통사고 보험처리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8.
- 양해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제23권 제2호), 2009.
- 이명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여부”, 월간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2000.
- 이재복, 양해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과 양도조항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제68집), 한국보험학회, 2004.
- 장덕조, “자동차보험에 관한 새로운 법적 고찰-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법·지식재산법의 새로운 지평, 진산 김문환 선생정년기념논문집 (제2권), 법문사, 2011.
- 조규성, 「자동차보험론(제2판)」, 동방문화사, 2014.

Abstract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the one which an insurance gives compensation for the physical damage when the insureds are struck accidents caused by uninsured car.

So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automobile insurance of Korea play a important role in the car accident, especially if the accident occurred due to uninsured car.

But in car accident compensation practices, dispute related to the meaning and range of uninsured cars of this agreement' contents occurred frequently.

This Supreme Court' judgment is the one which sentenced to clarify the meaning and range of uninsured cars, this paper examined application of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conditions.

In addition, I suggest that amendment of automobile insurance clause is necessary.

**※ Key words : uninsured motorist coverage, range of uninsured car,
car accident, subrogatio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the Supreme Court' judgment**